

경상북도 소공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2025년도 경상북도에서는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소공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의 수혜소공인은 사업신청불가** 하오니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프로그램 중복지원 가능)
 - *소공인 육성프로젝트 선정 대상자도 가능
-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본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 ▲ 본 건은 지원금이 없는 사업으로 협약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종합적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인지도 강화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7월 31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 사후관리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 성과, 만족도 등 지속관리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전산 접수

* 사업공고 > 해당 사업 우측 **신청** 버튼 클릭

라. **지원내용(지원금 無, 경북테크노파크 직접지원)**

< 글로벌 마케팅 지원항목 >

구분	항목	내용
1	글로벌 마케팅 지원	• 글로벌 프로모션 포토폴리오 제작 지원 • 소공인 물품 해외시장 반응 조사 및 수요피드백
2	타겟기업 심층 지원	• 타겟기업 글로벌 BM 수립 • 기업별 타겟 바이어 발굴 및 컨택지원

* 결과물 산출은 협약기간 내 진행 必

마. **지원방식**

○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된 공급업체를 통해 소공인 수요 조건에 맞는 지원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선정기업 대상으로 상세 준비사항 추후 안내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공인만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붙임2] 참고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 및 2025년 수혜 소공인 사업신청 불가
(단,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선정 대상자 및 소공인 지원프로그램 중복지원 가능)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5.7.31.)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붙임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5. 6. 23.(월) ~ '25. 7. 31.(목)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상단 “공고·안내”→“사업공고” →“경북TP”→“경상북도 소공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gbtp.or.kr) 사업공고→첨부파일 양식 다운→우측 [신청버튼] 클릭 후 업로드하여 제출 - 신청서 제목 및 파일명: 경상북도 소공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_기업명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다. 신청서류(아래표의 순서대로 하나의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구분	연번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서식2> 수행계획서(4장 이내) ▶ <서식3, 4, 5> 평가결과 수락 약약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 성실의무이행 약약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6	2개 中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p>※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제출</p> <p>※ 24년도 서류발급 불가한 경우 23년도 서류로 대체 (단, 공고시작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가능)</p>	
7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p>*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직전 사업연도('24년 1월~12월)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p> <p>*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24년 1월 ~ 12월 해당)</p>		
선택 서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증빙서류 * 6P 가점항목 참고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유효해야함

라. 서류 발급정보 ※ 아래서류 관련 문의사항은 발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	발급처	사이트 주소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p style="text-align: center;">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p>	<p style="text-align: center;">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확인서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p>	<p style="text-align: center;">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건강보험공단</p>	<p style="text-align: center;">www.nhis.or.kr 1577-1000</p>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자격확인 → 서류검토 → 지원

- (서류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자격요건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이상 없을 시 지원 예정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경북산불 피해지역(3)	·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 경북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본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신청 마감일(25.7.30) 기준으로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대 3점까지 부여하며, 신청서 작성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증빙서류 없을시 가점부여 無)

6.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적정성 평가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 7월 31일	광역전담기관 (재)경북테크노파크 ~ 7월 31일	평가위원회 *선정대상 적격성 검토 등 ~8월
사업수행	결과보고	
경북테크노파크 직접지원 8월~10월 31일	경북TP→소공인 10월 31일 이전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문의처

가.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접수처
사업문의	김주경 연구원	☎ 053-819-8181	(재)경북테크노파크 온라인 접수 (사업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8. 유의사항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경북테크노파크 및 공단에 있습니다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공급기업에 자부담+부가세를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이후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표준산업분류	업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확인 기준**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¹ 중 소상공인²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³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④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붙임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